

[붙임]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	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	
제7조의4(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)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(발급 후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)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(이하 '휴면카드'라 함)로 된 경우,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,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,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.	제7조의4(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)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(발급 후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)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(이하 '휴면카드'라 함)로 된 경우,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, 전화,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, 전화,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.	- 여전업 감독규정 (제24조의11) 일부개정안 반영
제3장 카드의 이용	제3장 카드의 이용	
제15조(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) ① ~ ③ (생 략) ④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(단, 회원의 권익을 증진 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 1. 카드사 또는 제휴업체의 휴업·파산·경영상의 위기 또는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<u><신 설></u>	제15조(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(단, 회원의 권익을 증진 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 1. <u>카드사의 휴업·파산·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</u> <u>1의2. 제휴업체의 휴업·파산·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·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</u>	- 금소법 제20조 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관련 문구 정비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2. ~ 3. (생 략) ⑤ (생 략) 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,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,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 전달, 전화,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,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부가 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,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 전달, 전화,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,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하여 드립니다. 1. 제4항제1호, 제2호 : 사유발생 즉시 2. 제4항제3호 :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⑦ ~ ⑫ (생 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,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,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우편, 전화 또는 팩스,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부가 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,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우편, 전화 또는 팩스,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하여 드립니다. 1. 제4항제1호, 제1호의2, 제2호 : 사유발생 즉시 2. 제4항제3호 :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⑦ ~ ⑫ (현행과 같음)	-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감독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부가 서비스 변경 관련 통지 방법 문구 정비
<신 설>	제15조의3(카드 이용내역 표시) 카드사는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하위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드립니다.	- 권익위금응위의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개선 제안사항(21.3월) 반영

현행	개정(안)	비고
	<u>단, 결제대행업체의 전산개발 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,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니다.</u>	
제4장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	제4장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	
제24조(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계약 철회) ① 회원은 제46조에 따라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② (생략)	제24조(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계약 철회) ① 회원은 「 <u>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</u> 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② (현행과 같음)	- 제46조 삭제에 따른 근거 변경
제7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	제7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	
제40조(카드의 분실·도난신고와 보상) ① ~ ② (생략)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·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	제40조(카드의 분실·도난신고와 보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·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	- 오타 수정
제9장 보칙	제9장 보칙	
제46조(청약의 철회) 회원은 「 <u>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</u> 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	<u><삭제></u>	- 금소법 제46조(청약의 철회)의 대상 상품에서 신용카드 제외 반영
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 (생략)	제46조(위법계약의 해지) (현행과 같음)	- 조 번호 올림
제48조(변경승인 등)	제47조(변경승인 등)	- 조 번호 올림

현행	개정(안)	비고
(생략)	(현행과 같음)	
제49조(경과조치) ① ~ ⑤ (생략) ⑥ 제48조제6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합니다. ⑦ ~ ⑮ (생략) <신설> <신설>	제48조(경과조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제47조제6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합니다. ⑦ ~ ⑮ (현행과 같음) <u>⑯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'전자 문서' 추가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.</u> <u>⑰ 제15조의3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.</u>	- 조 번호 올림 - 조 번호 올림에 따른 변경 - 휴면신용카드 관련 고지수단 변경 사항의 적용일자 표기 - 카드 결제내역 표시개선 적용일자 표기
제50조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 (생략)	제49조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 (현행과 같음)	- 조 번호 올림
제51조(관할법원) (생략)	제50조(관할법원) (현행과 같음)	- 조 번호 올림